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9.12.24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불광5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21-1	심의결과	원안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심의</p> <p>■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공통사항 ></p> <p>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</p> <p>가. 환경성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 : 녹색건축인증 우수(그린1)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적용 - 비주거 : 녹색건축인증 우수(그린1)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적용 <p>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 6.37%적용(태양광 961.4kW, 연료전지 58kW) - 비주거 11.08%적용(태양광 46kW) <p>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</p> <p>3. 『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』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</p> <p>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</p> <p>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 <p>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</p>			

2019.12.24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